고유자산운용세칙

제 정 2011. 9. 19 개 정(1) 2014. 5. 29 개 정(2) 2016. 9. 26 개 정(3) 2019. 2. 12

개 정(4) 2020. 9.29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고유자산운용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고유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법규와 한국투자공사법 및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단기자금 운용) ①고유자산운용 담당부서(이하 "운용 담당부서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상품에 예치·운용하는 경우 유동성, 안정성 및 시장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용금액 및 만기를 결정하고, 고유자산운용 담당부문장(이하 "담당부문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운용한다.

- 1. 양도성예금증서(CD)
- 2. 정기예금
- 3. 단기금융시장예금계정(MMDA)
- 4.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(MMF)
- 5. 환매조건부채권매매(RP)
- 6. 자산관리계좌(CMA)
- 7. 기타 고유자산운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투자상품
- ②운용담당부서는 수시입출식 상품에의 예치를 제외하고, 3개월 이상 만기 상품 예치·운용 시에는 시장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제안을 받아 결정한다.
- ③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분산투자를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상품별 거래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.
- ④운용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의

- 예치 및 단기자금운용 상품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다.
- 1. 해당 상품 또는 거래기관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
- 2. 다른 금융상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
- 제4조(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 절차) ①운용담당부서는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적정성 등을 포함하는 투자(안)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에 제출하다.
 - ②운용담당부서는 담당부문장의 승인을 받아 현지실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거시경제분석 및 산업분석 등을 위하여 리서치 담당부서에게 별도의 분석 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위원회는 운용담당부서의 투자(안) 검토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투자(안)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.
 - ④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필요시 투자(안)에 대한 리스크분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첨부할 수 있다.
 - ⑤사장은 운용담당부서의 투자(안) 검토보고서,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투자 여부를 결정한다.
- 제5조(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절차) ①운용담당부서는 담당부문 장의 승인을 받아 제안요청서 발송대상 운용사 선정기준 및 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하며, 선정된 운용사에 제안요청서를 발송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한다.
 - ②운용담당부서는 담당부문장의 승인을 받아 현지실사 대상 운용사를 선정하고 수행하며, 그 평가결과를 포함하는 위탁운용사 선정(안)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.
 - ③위탁운용사가 간접투자의 기초자산이 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우선협상권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우선협상권 보유 등을 목적으로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의향 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④위원회는 운용담당부서의 선정(안) 검토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선정(안)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.
 - ⑤리스크관리 담당부서는 필요시 선정(안)에 대한 리스크분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첨부할 수 있다.
 - ⑥사장은 운용담당부서의 선정(안) 검토보고서,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.

- **제6조(투자관련 계약)** ①운용담당부서는 선정된 운용사와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투자관련 계약업무를 담당한다.
 - ②운용담당부서는 고유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투자지침서(Investment Guidelines)를 작성하여 운용사에 교부할 수 있다.
 - 1. 투자목적
 - 2. 투자대상 자산 및 제한 대상
 - 3. 성과측정 기준
 - 4. 보고 의무 등
- 제7조(모니터링) ①운용담당부서는 고유자산 운용 관련 계약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준법감시 담당부서에게 통지한다.
 - ②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령 및 관련계약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한다.
 - ③운용담당부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시장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며, 관련 운용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한다.
 - 1. 경영상의 변화 여부
 - 2. 재무상태의 중대한 변화
 - 3. 주요 임직원의 변동
 - 4. 법령 위반 및 감독기구의 징계 여부
- 제8조(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의 처분 및 해지) 공사는 투자목표 수익률이 달성되었거나, 투자전략의 변화, 계약 위반, 수익률 부진, 경영상 중대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유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으로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자산의 처분, 계약 해지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.
- 제9조(외부자문사 및 자문조직) ①운용담당부서는 외부자문사를 선정·고용하여 투자, 재무, 회계, 세무, 실물자산 위탁관리, 전문컨설팅 및 중개업과 같은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단, 외부자문사는 투명성, 객관성 및 경쟁원칙에 따라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.
 - ②운용담당부서는 직제규정 제 15조에 따라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부서 직원을 포함한 공사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투자안에 대한 세부 분석 및 실사 업무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1년 9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9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